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다크패턴을 활용한 이용자 의사결정 방해행위 금지 등 〉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25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다크패턴을 활용한 이용자 의사결정 방해행위 금지 등	2
2.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위반한 대리자의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 행위로 의제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8.

다. 회부연월일 : 2025. 1.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서비스의 확산과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이용자 선택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서비스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 조제1항·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다크패턴을 활용한 이용자 의사결정 방해행위 금지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함(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금지행위) ① ----- ----- ----- <u>한정하며, 제12호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u> ----- ----- ----- ----- ----- ----- ----- ----- -----.
1. ~ 11. (생략) <신설>	1. ~ 11. (현행과 같음) <u>12.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등</u>

현행	개정안
제99조(벌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제99조(벌칙) ----- ----- ----- ----- -----제5호 의2·제12호----- ----- -----.

☐ 검토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2조제1항 및 제2항1)에서는 기간

1)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

통신업무 외의 전기통신업무를 수행하는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인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99조2)에 따라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 개정안 중 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부분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크패턴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해당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다만, 3억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되는 행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3)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제99조(벌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안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⁴⁾의 중요사실 거짓 고지 등의 간접적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은 다크패턴 위반 행위도 벌금형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서는 제외하려는 것임.

- 현행법 상 「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의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지행위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5호),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제5호의2)로 규정됨.

○ 동 개정안의 ① 다크패턴을 금지시키려는 신설 규정(안 제50조 제1항제12호 신설)과 ②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는 벌금형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안 제50조제2항 개정)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첫째, 다크패턴을 금지시켜려는 개정안 부분은 동의 없는 부가통신서비스 자동 갱신, 유료 전환 등의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

4)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 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의2.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⁵⁾을 금지하여,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크패턴 행위의 핵심적 적용 방식과 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크패턴은 숨은 갱신 등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인 ①편취형, 거짓 할인 및 추천 등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인 ②오도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도록 유도하는 ③방해형,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인 ④압박형으로 구분됨.

<다크패턴의 범주와 유형>

범주 구분	내용	세부 유형
편취형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 숨은 갱신 ◆ 순차공개 가격책정 ◆ 몰래 장바구니 추가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거짓 할인 ◆ 거짓 추천 ◆ 유인 판매

5)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영국의 해리 브링널(Harry Brignull)이 2010년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해리 브링널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다크패턴이라고 정의함.

범주 구분	내용	세부 유형
		◆ 위장 광고 ◆ 속임수 질문 ◆ 잘못된 계층구조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방해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숨겨진 정보 ◆ 가격비교 방해 ◆ 클릭 피로감 유발
압박형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 반복간섭 ◆ 감정적 언어사용 ◆ 시간제한 알림 ◆ 낮은 재고 알림 ◆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2023. 7.

○ 동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다크패턴을 활용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특히,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모티콘 서비스가 자동 결제되거나, OTT 서비스 등의 부가통신서비스 정기 구독 해제가 복잡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부가통신사업자가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다만, 동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않

을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의무 불이행 시에는 사실조사,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과징금 등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대상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는 다크패턴이 명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거나,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여 규정함으로써 규제가 예상되는 법률 내용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6)에서는 재화 등의 가격

-
-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3.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나.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 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 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5.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

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거나,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전자상거래에서 금지되는 다크패턴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서도 타 법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인 다크패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벌금형 처벌 대상에서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는 부분은 현행법상 간접적인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등에 대해서 벌금형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유사하게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다크패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형벌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동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처벌 대상은 되지 않지만 사실조사(제51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52조), 과징금 부과(제53조) 등의

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이 됨.

- 또한, 동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전 법률에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이 개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법 「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는 2025년 1월 21일에 공포되고 2025년 7월 22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서 개정된 부분임. 동 개정안의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 이후여서 동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현행법이 아닌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같은 법 제99조제5호에서 주요 사항 미고지 및 거짓 고지 등을 벌금형 처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의 벌칙 규정 수정안>

현행법	공포 후 시행전 법률	수정안
제99조(벌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벌칙) ----- ----- ----- -----

현행법	공포 후 시행전 법률	수 정 안
과 다르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1. ~ 4. (생략)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 제1항 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 -----제5호의2·제12호----- -----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상 다크패턴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전자상거래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 분야 이외에도 유료 서비스의 무료체험 신청 및 해지, 불편 광고·알림 등 모든 온라인 분야에서 발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또한, 다크패턴은 그 성질상 금지행위 유형 제5호의2(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등)와 유사하게 간접적인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중요사항 미고지 등과 같이 다크패턴 행위도 형벌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에 따른 다크패턴 금지행위 규정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가능한 ‘부당고객유인’⁷⁾ 행위로서 중복규제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중복되어, 피조사인들의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은 다음과 같음.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상 다크패턴 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이중 규제의 우려가 있으며, 다크패턴

7)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금지규정의 법문언이 모호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어 중복 규제에 해당하며, 법적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임.

- (주)삼성전자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만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로 규정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종합적으로 보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크패턴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대상 확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중복 규제 우려 등을 검토하여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로 의제하여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개정).

– 14 –

□ 검토의견

-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⁸⁾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등과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협정을 체결한 자가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등의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로 의제하고 있음. 동 개정안에서는 의제되는 행위에 다크패턴으로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 사업자 등)와 협정을 통해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가 다크패턴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해당 현행법 조항은 주로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 등)와 대리 영업 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중요사항 미고지나 거짓고지 등에 대해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로 의제하고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다른 형태의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

8)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5. 7. 22., 2025. 1. 21., 일부개정] 제50조(금지 행위) ②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통해 이용자간 계약의 대리 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다크패턴 행위를 적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를 현행법에서 주로 규제되는 대리 영업 계약 등과 동일한 성격으로 봐서 의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 동 개정안 부분에 대한 소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법 위반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가 행한 것으로 의제하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기간통신사업자가 행하는 대리점, 판매점을 통한 영업 형태에 준해서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는 입장임.
- 종합적으로 보면, 해당 부분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측면과,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기간통신사업자가 행하는 대리점, 판매점을 통한 영업 형태에 준해서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견해를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임.

문 의 처
02)6788-5225